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8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 박대출·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유영하·유용원 윤상현·윤영석·윤재옥 윤한홍·이달희·이만희 이상휘·이성권·이종박 이인선·이종배·이종욱 이철규·이헌승·인요한 임이자·임종득·장영욱 정동만·정성국·정연욱 정점식·정희용·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인의 조정훈·조지연·주진우 주호영·진종오·최보윤 추경호·한기호·한지아 의위(10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 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 2.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해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 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실용화 지원
-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생명공학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 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ㆍ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인력양성 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 이력 양성
- 2.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 3.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 관·단체로의 파견
- 4.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이전·확산 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 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에 따른다.
-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	현 행	개 정 안
그 그 시선 해제가 꾀인하 경우에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 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 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 학기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 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생략) <신 설>

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 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 학기술의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 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

① (현행과 같음)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에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결합 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 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 충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융복합 ③ 제1항 및 제2항-----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생 략)

<신 설>

-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실용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 력 양성
-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 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

|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생명공학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 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기 업 · 대학 · 연구기관 ·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신 설>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대한 지원) (생략)

<신 설>

-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 력 교류
-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ㆍ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 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촉진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 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생략) <u><신 설></u>

<신 설>

품(試製品)의개발・제작및설비투자에필요한비용의지원

-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인력양성 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 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 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연 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

<신 설>

한 전문인력 양성

- 2.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 3.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로의 파견
- 4.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 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이전 ·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 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 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

 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